

의 안 발 의 서

의 번	안 호	2015 -
--------	--------	--------

수 신 : 거창군의회 의장 2015. 06. .

제 목 :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 임 :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 표주숙 의원

서 명 날 인 서

□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원(대표발의자)	표 주 숙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

발의일자	2015. 6. .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외 명

1. 제정이유

○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현재, 가조·고제·위천면 지역에 이식하여 관리해오고 있으나, 군이 시행하는 개발사업 일부에 지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제정을 통해 체계화함으로써 민간의 개발사업 현장에서 베어지는 수목을 기증받는 등 군내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산림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공공사업장 내 조경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나무은행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나무은행 운영에 따른 군수의 책무와 사전협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라. 수목 기증 및 수목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마. 옮겨 심을 수목 선정기준, 수목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 바. 나무은행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6조
- 나. 예산 조치 : 기편성
- 다. 집행부의견조회 : 기획감사실, 산림녹지과
- 라. 그 밖의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입법예고 : 2015. 6. . ~ 6. .
 - (4)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목소유자”란 해당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의 설치·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군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장 내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 협의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 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수형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
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활용) ① 군수는 매년 나무은행에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②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은 거창군의 공용·공공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이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을 무상으로 옮겨 심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군수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연 락 처	
기 증 나 무 내 역	위 치			생육장소 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수 종	수 량	주 규 격	높이, 흉고직경, 수관폭 등
	옮겨심기 희 망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유			
<p>위와 같이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p> <p>거창군수 귀하</p>				
<p>(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p>				

[별지 제3호서식]

나무활용 동의서

(소유주 동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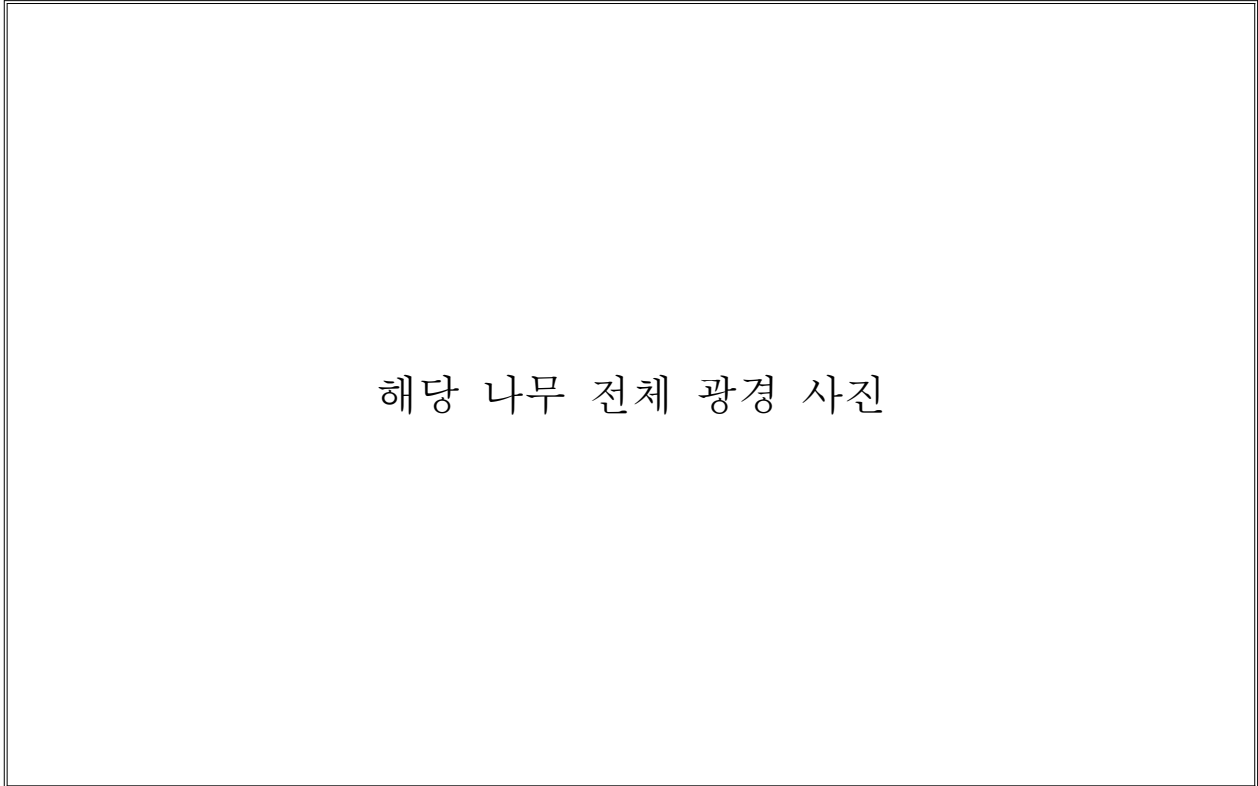
소유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수목소재지					
발 생 사 유					
내역	수 종	규 격	수량(주)	비 고	
	계				
기 타 사 항					
<p>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거창군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수목소유자 : (인 또는 서명)</p> <p>거창군수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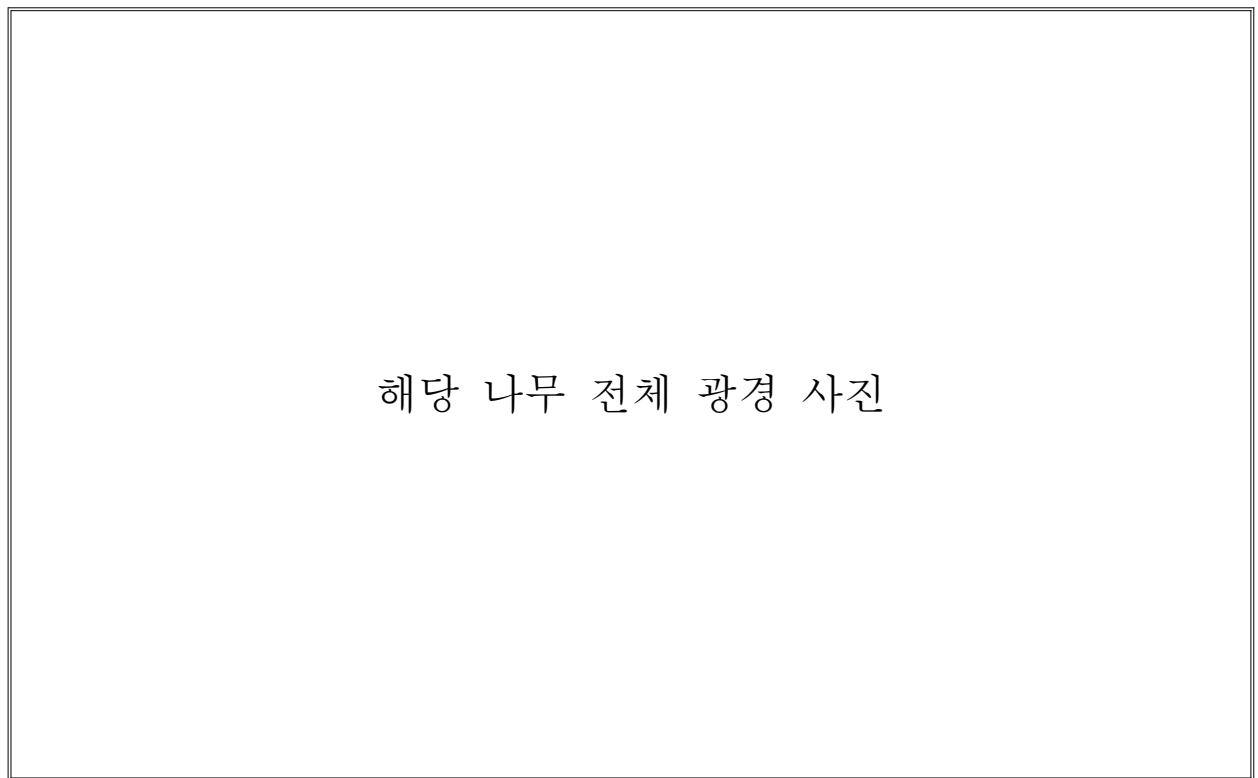
기본정보	소유자	주소			
		성명	연락처		
	수목소재지				
	발생사유		옮겨심기 가능기간	~	
수목내역					
현장조사	조사일시		조사자 직·성명		
	현장여건				
	장비투입 여부				
	옮겨심기 가능수량				
	조치의견				
소요예산					
붙임 현황사진첩 1부.					

현황사진



해당 나무 전체 광경 사진

수목 및 위치 설명(지번, 마을 명 등)



해당 나무 전체 광경 사진

수목 및 위치 설명(지번, 마을 명 등)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 관련조문 : 제9조, 제1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출	도비					
군비	100		50	50	50	50	300	
소계(a)	100		50	50	50	50	300	
세입	국세							
	지방세							
	소계(b)							
총 비용 (a-b)		100	50	50	50	50	300	

3. 관련 의견

-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 중 활용가능한 수목과 기증 수목을 나무은행에 이식, 관리 하였다가 군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장 내 조경수로 활용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 훼손의 최소화 및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군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보조사업비 : 연간 50백만원

작성자 : 전문위원 박완묵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차.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 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 2. 가로수를 옮겨심기
- 3. 가로수의 제거
-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2.6.1., 2013.3.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

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4.3.11.>

⑦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제6항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⑧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른 확인·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 조성·육성 관련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07.12.21.]